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02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를 '13.4.11.에 개소하였으며,
- 나. 그간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확대와 질적성장에 기여하였음
- 다. '12.10.12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해당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(서울혁신파크 內)
- 시설규모 : 1,486㎡(1동 1층 일부)
- 시설용도 : 사무실, 공유오피스, 공동교육장, 사회적경제 매장 등
- 운영인력 : 총 24명

나.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1조 및 제12조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사회적경제 모델발굴과 사업화 지원,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 운영 필요
-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사회적경제 주체양성과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
-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-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, 컨설팅, 평가
-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
-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 지원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
-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마. 위탁기간 : 3년('21.1.23. ~ '24.1.22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(안) : 6,500,000천원('21년 예산편성안 기준)

- 산출근거 : 인건비 1,530,000천원, 운영비 360,000천원, 사업비 4,610,000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('20.7.8.)
-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'적정' 의결('20.8.13.)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'적정' 의결('20.9.29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1조 및 제12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(조직담당관, '20.1월)
 - 재계약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(조례 제2조 제5호)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-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출

※ 작성자 :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이두영 (☎2133-5484)

※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

제11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
2.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
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5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
6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
7.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
8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9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